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2년 8월 29일 (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재형**

주관 바른사회시민회의



[프 로 그 램]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05	국민의례	
14:05~14:15	【개회사】	최 재 형 (국회의원 국민의힘 제2대 국회의원)
	【환영사】	양 준 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연세대 교수)
◆ 좌 장: 최 창 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14:20~14:40	【발제 1】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 위헌요소와 경제적 손실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14:40~15:00	【발제 2】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문제와 대안 박 인 환 (전 건국대 교수, 변호사)
15:00~15:20	【발제 3】	중대재해처벌법의 민사책임 문제와 대안 전 삼 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15:20~15:40	【발제 4】	건설업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 상 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건설안전기술사)
15:40~15:50	【토론 1】	조 봉 수 (해성기공 안전팀 이사)
15:50~16:00	【토론 2】	임 우 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16:00~16:15	종합 토론 & 질의 응답	
16:15~16:20	폐 회	

[목 차]

개 회 사

- 최 재 형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 ----- 7

환 영 사

- 양 준 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9

발 제

-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 요소와 ‘합리적 책임배분’ 실패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11
-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문제와 대안
박 인 환 (전 건국대 교수, 변호사) ----- 29
- 중대재해처벌법의 민사책임 문제와 대안
전 삼 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51
- 건설업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 상 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건설안전기술사) ----- 65

토 론

- 조 봉 수 (해성기공 안전팀 이사) ----- 77
- 임 우 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85

개 회 사



최 재 형

제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울시 종로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정책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취지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시민과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우리 사회가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합당한 목적일지라도 그 절차와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규정이 분명치 않다면 이는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과 모호한 의무 규정, 그리고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나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정은 명확해야 합니다. 모호한 규제들이 남발된다면 전반적인 산업생태계에 혼란만 야기할 뿐, 해악 감소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산업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미나를 주관해주신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님과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의 사회를 맡아주신 최창규 교수님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조동근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가 현장 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제고하고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국회의원 최재형

환영사



양 준 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양준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최재형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 국회의원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회를 맡아 주신 최창규 교수님, 발제를 맡아 주신 조동근 교수님, 박인환 교수님, 전삼현 교수님과 한상준 부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 주실 조봉수 이사님과 임우택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과연 국회가 이 법을 통해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분노의 정치를 위해 손가락질할 사람을 찾아 돌로 쳐 죽일 율법을 만든 것은 아닌지 요한 복음서 7장 53절~8장 11절(공동번역성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아야 할 때라고 합니다.

사고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근로자를 다치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모두가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불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악마화하고 처벌한다고 불행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행만 늘어날 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 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산업 재해사망자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동법 실시전에는 줄어들던 산업재해사망자 수가 오히려 늘어 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을 무시한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법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현장에서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합니다. 농성으로 법을 만들고 처벌로 불행을 증폭시켜서는 안 됩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와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법 세미나를 도와주신 분들과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정책세미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1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 요소와
'합리적 책임배분' 실패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

■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 요소와 ‘합리적 책임배분’ 실패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전면에 내세웠다. ‘강한 것을 억누르고 약한 것을 지지해 줌으로써’ 강자와 약자 간의 세력균형을 꺾어야 한다는 것이다. 억강부약은 원초적 호소력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안에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을 개연성이 크다. 대한민국의 귀족 노조는 억강부약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낸 ‘괴물’이다. 억강부약이 정당화되려면 ‘특정 강자로 특정 약자’가 만들어진 것이 논증돼야 한다. 그랬다면 착취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억강부약은 그릇된 평등주의에서 비롯된 또 다른 만들어진 ‘불공정과 차별’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6일 발효되었다. 동법은 크게 ‘처벌조항과 의무준수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처벌 조항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관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¹⁾ 의무조항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강자’(强者)로 인식되고 ‘가해자’로 의제되는 경영자에게 ‘무과실(無過失)의 무한책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무과실 책임주의’는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지게 한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를 뛰어 넘는 것이다.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자 등에 대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잉입법이자 폭거다.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중대재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발상이다.

20년 전에 발효된 제조물책임법(PL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2002년 7월에 발효된 제조물

1)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 되었는데,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보상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PL법은 제품결함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종의 ‘가해행위’로 간주해 ‘불법행위 책임’ 법리를 견지하고 있다.

PL법 시행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피해자 구제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물어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즉 ‘제조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배상책임을 짊어진 제조업자는 제품가격의 인상을 통해 결함위험을 여러 소비자에게 분산시킨다. 이는 제조자의 ‘자기보험’(self insurance)으로, 소비자는 제조자가 정한 바대로 보험료를 자기도 모르게 납부한 것이다.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인정치 않을 경우 소비자는 개인보험을 통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두 경우의 소비자 실질부담은 같다. 따라서 피해자구제 측면에서 제조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생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조물책임법처럼 ‘불법행위법’에 기초하고 있다. 입법자는 경영자와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면 안전이 꺾해질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처벌 강화’는 국민경제에 ‘숨은 비효율과 손실’을 끼칠 수 있다. 통상 교량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는 감속운행을 한다. 하지만 ‘운전자의 주행권’을 내세워 감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교량의 난간을 보강해야 한다. 그러면 상판 무게가 무거워져 교량 통과하중이 줄어들게 된다. 지금 한국에선 셀 수 없을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손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건설산업 현장에서 경영자와 안전관리자에게 ‘무과실 무한책임’을 지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역강부약을 실천하는 제도장치’로 작동할까? 그렇지 않다. 또 다른 왜곡과 불평등을 낳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만큼 한국경제의 효율은 저상(沮喪)될 것이다.

I.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험적 요소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는 당위론에 치우쳐,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 책임주의’ 원칙위배 등 위험적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다. 위험적 요소를 적출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목적을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의 안전권 확보’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사고의 사전적 방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다. 손쉬운 처벌조항들만 가득차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자, 기업을 중복 처벌하고 있다. 그 것도 모자라 사업주와 경영자 그리고 법인에 대해 ‘5배의 징벌적 배상제’를 포함하고 있다.

사업주, 경영자, 기업을 중복·가중 처벌하면 중대재해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가 의문이다. 경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론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 처벌보다 산업안전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안전 문화 정착 등 사고방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정치적 상황과 정치논리에 경도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대체입법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맹점은 ‘책임원칙’(liability rules)에 대한 합리적 논의 없이, 마녀사냥 식으로 경영자와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을 밀어붙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식상으로는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재해를 중대처벌’하는 구조이다. 경영자에 대한 증오가 묻어 있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미워하는, 주객전도의 독소로 가득 차 있다.

II.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법행위법리’ 경제 분석

중대재해처벌법은 ‘불법행위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각종 ‘책임원칙’(liability rules)을 개관하고 어떤 책임원칙이 최선의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고찰한다.

1. 각종 책임원칙(liability rules) 개관

사고 방지를 위해 가해자 X와 피해자 Y가 기울인 주의 수준은 $x(\geq 0)$, $y(\geq 0)$ 이며 손해부담 몫은 $S^x(x, y)$, $S^y(x, y)$ 이다. 이때 “ $S^x(x, y) + S^y(x, y) = 1.0$ ” 이 성립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현장 경영자(안전관리 책임자)가 ‘가해자’로 산업현장의 피고용자가 ‘피해자’로 의제

된다.

‘무책임원칙’(no liability)은 가해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손해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킨다. ‘엄격책임원칙’(strict liability)은 사고손해 책임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엄격책임원칙을 적용한다. 과실유무와 관계 없이 경영자는 사고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엄격책임원칙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책임원칙’(let the seller beware)’으로도 지칭된다. ‘과실책임원칙’(negligence rule)은 가해자가 ‘법적 주의 의무로서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가해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가해자는 면책된다.

‘기여과실의 항변이 인정되는 엄격책임원칙’(strict liability with the defence of contributory negligence)은 ‘엄격책임원칙’에 피해자의 ‘기여과실원칙’을 더한 것이다.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기여과실의 항변이 인정되는 과실책임원칙’(negligence rule with the defence of contributory negligence)은 ‘과실책임원칙’에 ‘피해자의 기여과실원칙’을 더한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부과된다. 가해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피해자 역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부분적으로’ 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상대적 과실책임원칙’(relative negligence)은 가해자의 ‘한 단위 주의비용의 한계생산성’이 피해자의 그것보다 큰 경우 가해자가 손해 부담을 진다는 원칙이다. 즉 손해를 예방하는 데 비교우위를 가진 주체가 사고 예방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비교과실책임원칙’(comparative negligence rule)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사고손해를 쌍방에게 부담시킨다. 자동차 사고 손해판정이 이에 해당된다.

<표-1>은 각종 책임원칙하의 손해분담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표-1> 각종 책임원칙에 따른 손해분담

각종 책임원칙	면책특권 기준	손해분담기준
무책임 원칙 (no liability)	소비자(피해자) 책임원칙 let the buyer beware	$S^x(x, y) = 0.0$ $S^y(x, y) = 1.0$ $\forall x, y$
엄격책임원칙 (strict liability)	제조사(가해자) 책임원칙 let the seller beware	$S^x(x, y) = 1.0$ $S^y(x, y) = 0.0$ $\forall x, y$
과실책임원칙 (negligence rule)	가해자가 '상당주의'를 기울인 경우 면책	$S^x(x, y) = 1.0$ if $x < X^*$ $S^x(x, y) = 0.0$ if $x \geq X^*$
기여과실의 항변이 인정되는 엄격책임원칙 (strict liability with the defence of contributory negligence)	엄격책임+기여과실 인정	$S^x(x, y) = 1.0$ if $y \geq Y^*$ $S^x(x, y) = 0.0$ if $y < Y^*$
기여과실의 항변이 인정되는 과실책임원칙 (negligence rule with the defence of contributory negligence)	과실책임+기여과실 인정	$S^x(x, y) = 1.0$ if $x < X^*$ and $y \geq Y^*$ $S^x(x, y) = 0.0$ otherwise
상대적 과실책임원칙 (relative negligence)	가해자의 한 단위 주의비용의 한계생산성 ²⁾ 이 피해자의 그것보 다 큰 경우 가해자가 손해 부담	사고예방 억제효율이 높은 쪽이 손해부담 ³⁾
비교과실책임원칙 (comparative negligence rule)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상대 적인 크기에 따라 사고손해를 쌍방에게 분담시킴	교통사고 손해사정

2. '가해자의 주의정도'가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피해자'의 행위는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해자'의 행위만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분석한다. 보도(歩道)를 걷는 보행자를 자동차가 밀고들어와 보행자를 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가해자의 '주의정도'만이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맥락에서는 경영자의 안전준수 행위만이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한다.

사회적 목표는 가해자의 '주의비용'(costs of care)과 '기대사고손해'(expected accident losses)의 합, 즉 '총사고비용'(total accident costs)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각종 책임원칙 하에서 가해자는 얼마만큼의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 총사고비용의 최소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등의 문제를 설례(設例)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⁴⁾

2) 주의 수준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기대되는 손해감소액 감소분

3) 예컨대 택시에서 내릴 때,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쪽은 택시승객이라는 것이다.

4) 본 연구에서는 '설례(시뮬레이션)'를 통해 불법행위법을 분석한다. 설례는 Shavell(1987)과 신도

<표-2> 가해자 주의비용, 사고발생확률, 기대사고손해 및 총사고비용

주의비용	사고발생 확률(%)	기대사고손해(만원)	총사고비용(만원)
0	15	15	15
3(*)	10	10	13
6	8	8	14

<표-2>는 주의비용, 사고발생확률, 기대사고손해액 그리고 총사고비용간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액은 100만원이며, 사고발생확률은 가해자가 기울이는 주의에 반비례한다고 가정한다. 가해자가 기울이는 주의노력을 화폐평가해서 주의비용으로 나타낸다. 기대사고손해는 ‘사고발생확률×사고피해액’으로 계산하고 ‘총사고비용’은 주의비용과 기대사고손해의 합으로 계산한다. <표-2>에서 총사고비용은 가해자가 3만원의 주의비용을 들일 때 최소화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3만원이 ‘사회적 견지에서’ 효율적 주의비용이라는 것이다. 이제 각종 책임원칙 하에서 ‘사회적 효율성’을 비교한다.

1) 무책임원칙(無責任原則)

‘무책임원칙’(no liability principle)하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책임원칙이 채택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입히는 사고손해를 고려에 넣지 않고 의사결정을 한다. 가해자의 주의비용은 ‘0’이며 총사고비용은 ‘15만원’이 된다. 가해자의 주의비용은 사회적 최적수준 이하로, 총사고비용은 사회적 최적수준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2) 엄격책임원칙(嚴格責任原則)

‘엄격책임원칙’(strict liability) 하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모든 사고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므로, 가해자는 자신의 주의비용 뿐만 아니라 기대사고손해도 고려에 넣어 주의수준을 결정한다. 주의비용을 6만원 지불하면 사고발생확률은 떨어지지만, 주의비용이 증가한 것만큼 기대사고손해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가해자는 총사고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수준의 주의비용 3만원을 지불하게 된다.

3) 과실책임원칙(過失責任原則)

‘과실책임원칙’(negligence rule) 하에서는 가해자가 과실이 있을 때에만 사고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즉 가해자의 주의정도가 법(法)이 정한 ‘상당한 주의’(due care)의 정도에 미치지 못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고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법정 주의 수준’

철(1998) 등을 참조해 필자가 설계했다.

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정 주의 수준이 ‘사회적 최적 주의 수준’과 일치할 경우⁵⁾, 가해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가해자의 주의비용과 배상책임 유무, 기대배상액, 가해자의 총비용 사이의 관계는 <표-3>과 같게 된다. 표에서 보듯 가해자는 자신이 직면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만원’의 주의비용을 들이게 된다. 그 결과 총사회비용은 ‘13만원’으로 최소화되어 사회적 최적이 달성된다.

<표-3> 과실책임원칙 하에서의 가해자의 주의정도 선택
(‘법적 상당한 주의 정도’(3)가 ‘사회적 최적수준’(3)과 같게 설정된 경우)

주의비용	사고확률	가해자 배상책임	기대배상액	가해자 총비용	총사고비용
0	15%	있음	15	15	15(15+0)
3	10%	없음	0	3	13(10+3)
6	8%	없음	0	6	14(8+6)

과실유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주의정도 즉 상당한 주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주의정도보다 높을 때에는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예컨대 가해자가 ‘6만원’의 주의비용을 들였을 때에 비로소 무과실로 인정된다면, 가해자의 주의비용과 총비용 사이의 관계는 <표-4>과 같이 되고 가해자는 자신이 직면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6만원’의 주의비용을 기울이게 된다. 결국 과다한 주의비용 지출이라는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며, 총사고비용은 ‘14만원’으로 사회적 최소수준 ‘13만원’을 초과한다.

<표-4> 과실책임원칙 하에서의 가해자의 주의정도 선택
(‘법적 상당한 주의 정도’(6)가 사회적 최적수준(3)보다 높게 설정된 경우)

주의비용	사고확률	가해자 배상책임	기대배상액	가해자 총비용	총사고비용
0	15%	유	15	15	15
3	10%	유	10	13	13
6	8%	무	0	6	14(8+6)

‘과실책임원칙’하에서는 과실유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주의정도가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회적으로 효율적 결과 여부가 결정된다. 가해자는 기본적으로 과실유무 판정의 기준으로 설정된 수준만큼 주의를 기울일 것인 바, 그 만큼만 주의를 기울여도 배상책임을 면하므로 굳이 비용을 더 들여 그 이상으로 주의를 기울일 유인이 없을 것이다.

5) <표-2>에서 사회적 총사고비용을 최소화시켜주는 주의수준(3단위)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자(잠재적 가해자)에게 부과된 주의수준이 사회적 최적 수준 이상일 경우 <표-4>에서와 같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상의 논의에서와 같이, 무책임원칙은 가해자로 하여금 과소한 주의만을 기울이도록 하는 데 비해 엄격책임원칙은 가해자로 하여금 적정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한편 과실책임원칙 하에서는 가해자의 상당한 주의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에만 효율적인 결과가 유도된다. 책임원칙간의 효율성 비교는 <표-4>에 정리되어 있다.

가해자의 주의정도만이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엄격책임원칙은 법원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량의 측면에서도 과실책임원칙보다 우월하다. 엄격책임원칙의 경우 법원은 실제의 손해액만 산정하면 되지만, 과실책임원칙의 경우 법원은 이외에 추가로 가해자의 실제의 주의정도 및 사회적으로 최적인 주의정도를 판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4) 책임원칙(責任原則)의 효율성 비교

책임원칙간의 효율성 비교는 <표-5>에 정리되어 있다. ‘가해자의 주의정도만이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엄격책임원칙이 무책임원칙보다 당연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가해자의 주의정도가 사회적 최적 수준일 경우 과실책임원칙은 엄격책임원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법정 주의수준이 사회적 최적 수준 보다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가해자의 사회적 최적수준의 주의 의무는 ‘미지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법으로 정해지는 주의의무 수준은 최적 수준보다 높을 개연성이 크다.

<표-5> 각종 책임원칙의 효율성 비교

	주의비용(수준)	총사고비용 (사회적 비용)	사회적효율 여부
무책임원칙	0	15	비효율
엄격책임원칙	3	13	효율
과실책임원칙 (상당한 주의수준= 사회적 최적수준)	3	13	효율
과실책임원칙 (상당한 주의수준> 사회적 최적수준)	6	14	비효율

3. 가해자 및 피해자의 주의정도가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해자의 주의정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의정도도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분

석한다. 예컨대 보도(歩道)와 차도(車道)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면(裏面)도로에서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생각해 보자. 중대재해처벌법의 맥락에서는 사고 발생 위험은 ‘경영자와 건설노동자 주의정도’에 동시에 의존한다.

이 같은 경우 목적함수(사회적 목표)는 ‘기대사고손해’와 가해자 및 피해자의 ‘주의비용의 합’으로 계산되는 ‘총사고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각종 책임원칙 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얼마만큼의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인지, 그 결과 총사고비용의 최소화 즉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는 지’를 분석한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손해액은 앞의 설텀에서와 같이 100만원으로 가정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의 주의비용과 사고발생 확률의 관계는 <표-6>과 같다고 가정한다. ‘기대사고손해’는 사고발생 확률을 감안한 손해액이며, ‘총사고비용’은 기대사고손해와 가해자 및 피해자의 주의비용의 합이다.

<표-6> 주의비용, 사고발생확률, 기대사고손해 및 총사고비용

가해자 주의비용	피해자 주의비용	사고발생확률(%)	기대사고손해	총사고비용 (사회적 비용)
0	0	22	22	22
0	2	15	15	17
0	<u>4</u>	12	12	16(12+4)
3	0	13	13	16
<u>3</u>	<u>2</u>	10	10	15(10+3+2)
3	4	9	9	16
<u>6</u>	<u>0</u>	9.5	9.5	15.5(9.5+6+0)
6	2	8	8	16
6	4	7.5	7.5	17.5

1) 무책임원칙(無責任原則)

무책임원칙 하에서는 가해자는 사고손해를 고려에 넣지 않고 자신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주의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표-6>에서 가해자는 0원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사고손해를 스스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일 유인을 갖게 된다.

무책임원칙 하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0원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예상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게 될 총사고비용을 최소화시키는 4만원의 주의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결국 가해자의 주의비용은 ‘최적 이하’ (3만원이 아닌 0원)로 되고 피해자의 주의비용은 ‘최적 이상’ (2만원이 아

닌 4만원)으로 되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무책임원칙하의 총사고비용은 16만원으로 사회적 최소비용 15만원보다 크다.

2) 엄격책임원칙(嚴格責任原則)

엄격책임원칙 하에서는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사고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일 유인을 갖지만 피해자는 모든 사고손해를 배상받으므로 스스로 비용을 들여 주의를 기울일 유인을 갖지 않게 된다.

엄격책임 하에서 피해자는 0원 수준의 주의비용을, 그리고 가해자는 6만원 수준의 주의비용을 들이게 된다. 가해자는 3만원의 주의비용을 들여 13만원의 기대배상액에 직면하는 것보다 6만원의 주의비용을 들여 9.5만원의 기대배상액에 직면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최대한의 주의비용(6만원)을 들이게 된다. 피해자는 최적수준(2만원) 이하의 주의를 기울이고 가해자는 최적수준(3만원) 이상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이때의 총사고비용은 15.5만원으로 사회적 최적치(15만원)보다 커지게 된다.

3) 기여과실(寄與過失)의 항변(抗辯)이 인정되는 엄격책임원칙(嚴格責任原則)

“기여과실의 항변이 인정되는 엄격책임원칙”(strict liability with the defense of contributory negligence) 하에서는 피해자의 기여과실이 없는 한 가해자가 사고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의정도가 법이 정한 ‘상당한 주의’(due care)의 정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기여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사고손해를 피해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통상적인 의미의 ‘피해자 부주의’로 볼 수 있다.

기여과실의 항변이 인정되는 엄격책임원칙 하에서 법이 정한 피해자의 상당한 주의정도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과 일치하는 경우, 피해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유인을 갖게 되고 가해자도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유인을 갖게 된다. 즉 사회적으로 최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표-7>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상당한 주의정도를 사회적 최적수준인 2만원 수준으로 설정했을 경우, 피해자가 0원의 주의비용을 들였을 때에는 사고발생시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지만 2만원 혹은 4만원의 주의비용을 들였을 때에는 배상받게 된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의 주의비용, 기대사고손해, 기대배상액 그리고 가해자 및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총비용을 정리한 것이 <표-7>이다. <표-7>에서 가해자의 총부담비용은 자신의 주의비용에다가 기대배상액을 합한 값이다. 한편 피해자의 총부담비용은 배상을 받을 때에는 자신의 주의비용을, 기여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을 받지 못할 때에는 자신의 주의비용에 기대사고손해를 합한 것이 비용으로 잡힌다.

<표-7>에서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만원의 주의비용을 들이게 된다. 피해자는 2만원 수준의 주의만 기울여도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4만원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유인이 없다.

<표-7> 기여과실의 항변이 인정되는 엄격책임원칙하의 주의정도 선택
(피해자의 ‘법적 상당한 주의 정도’가 ‘사회적 최적’으로 설정된 경우)

가해자 주의비용	피해자 주의비용	기대 사고발생(%)	가해자 배상책임	가해자 기대배상액	가해자 총부담비용	피해자 총부담비용	사회적 총비용
0	0	22	무	0	0	22	22
0	2	15	유	15	15	2	17
0	4	12	유	12	12	4	16
3	0	13	무	0	3	13	16
<u>3</u>	<u>2</u>	10	<u>유</u>	10	13(3+10)	2	15(13+2)
3	4	9	유	9	12	4	16
6	0	9.5	무	0	6	9.5	15.5
6	2	8	유	8	14	2	16
6	4	7.5	유	7.5	13.5	4	17.5

피해자가 2만원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고 따라서 사고손해를 자신이 부담해야 함을 아는 가해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만원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기여과실의 항변이 인정되는 엄격책임원칙”하에서 피해자의 기여과실 유무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상당한 주의의 정도가 사회적 최적 수준과 일치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때의 총사고비용(사회적 비용)은 최소 비용인 15만원이다.

기여과실 유무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의정도 즉 피해자의 상당한 주의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주의정도보다 높게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사회적 최적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컨대 피해자가 4만원의 주의비용을 들였을 때 비로소 기여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가해자 및 피해자의 주의비용과 기대배상액, 각 당사자의 비용부담액 등의 관계는 <표-8>과 같게 된다. <표-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해자는 상당한 주의에 해당하는 4만원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고 가해자는 3만원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때의 사고총비용, 즉 사회적 비용은 16만원으로 사회적 최적치 15만원을 초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돌아와서, 잠재적 피해자인 건설 현장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최적 이상’일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개연성이 높다.

<표-8> 기여과실의 항변이 인정되는 엄격책임원칙하의 주의정도 선택

(피해자의 상당한 주의의 정도가 최적보다 높게 설정된 경우)

가해자 주의비용	피해자 주의비용	기대 사고발생(%)	가해자 배상책임	가해자 기대배상액	가해자 총부담비용	피해자 총부담비용	사회적 총비용
0	0	22	무	0	0	22	22
0	2	15	무	0	0	17	17
0	4	12	유	12	12	4	16
3	0	13	무	0	3	13	16
3	2	10	무	0	3	12	15
3	4	9	유	9	12(3+9)	4	16(12+4)
6	0	9.5	무	0	6	9.5	15.5
6	2	8	무	0	6	10	16
6	4	7.5	유	7.5	13.5	4	17.5

4) 과실책임원칙(過失責任原則)

과실책임원칙(negligence rule) 하에서는 가해자가 과실이 있을 때에만 사고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가해자에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 정도가 법에 의해 설정되면, 가해자는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유인을 갖게 된다. 피해자도 가해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피해보상이 면책되면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사고손해를 적절히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상당한 주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주의 정도와 일치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최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책임 분담 구조는 “기여과실의 항변이 인정되는 엄격책임원칙”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동일하다.

가해자 및 피해자의 주의정도에 따른 각각의 비용부담액을 게임행렬(game matrix)의 형식으로 표시하면 <표-9>와 같게 된다.

<표-9> 과실책임원칙 하에서의 주의정도의 선택

(가해자의 상당한 주의의 정도가 최적으로 설정된 경우)

		피해자의 주의정도					
		0		2		4	
가해자의 주의정도	0	22	0	15	2	12	4
	3	3	13	<u>3</u>	<u>12</u>	3	13
	6	6	9.5	6	10	6	11.5

게임행렬의 보수구조(payoff)를 보자. 각 칸의 ‘앞의 숫자’는 경기자1에 해당하는 가해자(경

영자)의 보수(비용부담액)이며, ‘뒤의 숫자’는 경기자 2에 해당하는 피해자(건설근로자)의 보수(비용부담액)이다. 예컨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0원’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가해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되고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므로 가해자의 부담액은 기대사고손해인 22만원, 피해자의 부담액은 0원으로 된다. 한편 가해자가 3만원, 피해자가 2만원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가해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결국 가해자의 부담액은 자신의 주의비용 3만원, 피해자의 부담액은 기대사고손해 10만원에다가 주의비용 2만원을 더한 12만원으로 된다. 게임행열의 다른 칸의 보수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다.

<표-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해자는 피해자가 얼마만큼의 주의를 기울이든 3만원 수준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총부담액을 최소화시키게 된다. 즉 상당한 주의에 해당하는 3만원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해자의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이 된다. 이 같은 사실, 즉 가해자의 주의정도 3만원이 우월전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2만원의 주의비용을 선택할 것이다. 이는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이다. 내쉬균형은 균형전략의 짝(pair)로부터의 ‘이탈 유인’이 없으므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과실책임원칙 하에서 가해자의 과실유무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상당한 주의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서 설정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최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가해자의 과실 유무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상당한 주의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주의정도보다 높게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4. 최소비용회피자 모형(最少費用回避者 模型)

가해자 혹은 피해자 일방만이 정(正)의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경우가 존재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중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자.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의 기대사고손해는 100이고 가해자와 피해자 중 일방이라도 주의를 기울이면 기대사고비용이 0으로 된다고 하자. 이제 가해자의 주의비용이 ‘40’이고 피해자의 주의비용이 ‘70’이라고 하자. 그러면 가해자가 ‘최소비용회피자’(least cost avoider)이다.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는 가해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자는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암묵적으로 경영자(안전책임자)가 ‘최소비용회피자’로 의제 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자가 최소비용회피자라는 경험적 증거는 없다. ‘억강부약(抑強扶弱)’의 사회적 정서만 있을 뿐이다.

Ⅲ. 중대재해처벌 개정 방향 탐색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1) 가해자의 주의정도가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해자 만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를 분석한다. 가해자의 주의수준이 사건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무책임원칙은 사회적 비효율을 낳는다. 가해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가해자에게 엄격책임을 물으면 가해자는 사고 방지 노력을 기울여효율적 결과를 가져온다.

가해자에게 엄격책임 원칙 대신 ‘과실책임 원칙’을 묻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 가능한 노력 수준이 사회적 최적 수준과 같으면 마찬가지로 사회적 효율을 가져온다. 단 가해자 면책을 위한 법적 요구 주의 수준이 사회적 최적 수준 보다 큰 경우 사회적 비효율이 초래된다. <표-5-1>은 >표-5>를 다시 인용한 것이다.

<표-5-1> 각종 책임원칙의 효율성 비교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원칙	주의비용(수준)	총사고비용 (사회적 비용)	사회적효율 여부
무책임원칙	0	15	비효율
엄격책임원칙	3	13	효율
과실책임원칙 (상당한 주의수준= 사회적 최적수준)	3	13	효율
과실책임원칙 (상당한 주의수준 > 사회적 최적수준)	6	14	비효율

2) 가해자 및 피해자의 주의정도가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해자 무책임원칙은 명확하게 사회적 비효율을 낳는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사고방지를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하지만, 가해자 무책임원칙은 ‘가해자 과소노력, 피해자의 과다노력’의 조합을 낳아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한다. 반면 가해자에게 엄격책임 원칙을 적용하면 피해자는 자기 방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엄격책임 원칙하에서는 ‘가해자 과다노력, 피해자 부작위’의 조합이 나타나 비효율이 발생한다.

피해자의 주의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여과실의 항변’을 인정해야 한다. 피해자의 주의

정도가 법이 정한 ‘상당한 주의’(due care)의 정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기여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사고손해의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통상적인 의미의 ‘피해자 부주의’를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고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

‘기여과실(寄與過失)의 항변(抗辯)이 인정되는 엄격책임원칙(嚴格責任原則)’을 가해자에게 적용하면 경우수가 2가지로 나뉜다. <표-7-1>과 <표-8-1>은 <표-7>과 <표-8>을 인용한 것이다.

<표-7-1> 기여과실의 항변이 인정되는 엄격책임원칙하의 주의정도 선택
(피해자의 ‘법적 상당한 주의 정도’가 ‘사회적 최적’으로 설정된 경우)

가해자 주의비용	피해자 주의비용	기대 사고발생(%)	가해자 배상책임	가해자 기대배상액	가해자 총부담비용	피해자 총부담비용	사회적 총비용
3	0	13	무	0	3	13	16
<u>3</u>	<u>2</u>	10	<u>유</u>	10	13(3+10)	2	15(13+2)
3	4	9	유	9	12	4	16

<표-8-1> 기여과실의 항변이 인정되는 엄격책임원칙하의 주의정도 선택
(피해자의 상당한 주의의 정도가 최적보다 높게 설정된 경우)

가해자 주의비용	피해자 주의비용	기대 사고발생(%)	가해자 배상책임	가해자 기대배상액	가해자 총부담비용	피해자 총부담비용	사회적 총비용
3	0	13	무	0	3	13	16
3	2	10	무	0	3	12	15
<u>3</u>	<u>4</u>	9	<u>유</u>	9	12(3+9)	4	16(12+4)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이상적인 개정 방향은 <표-7-1>을 따르는 것이다. <표-8-1>은 피해자의 상당한 주의 요구가 최적보다 높은 경우,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상당 주의 수준이 최적보다 높을 개연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기여과실의 항변이 인정되는 엄격책임 원칙’이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되는 것이 정책순리로 판단된다.

IV. 맺는말

특정 국가가 번영을 구가하거나 쇠락(衰落)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체제에 불문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그 대답은 철칙으로 주어졌다.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과 권한’ 간에 균형

을 맞추는 것이다. 권리에 비해 의무가 가볍다면 그 사회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 책임과 권한도 같은 맥락이다. 권한이 책임에 의해 규율되지 않으면 권한은 필히 남용된다.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국회의원들은 막강한 입법 권한을 갖고 있지만, 입법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이 책임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정치세계와 달리 ‘사적자치(史的自治)’를 요체로 하는 민간 부문에서는 ‘책임과 권한’ 간에 균형이 잡혀있다. 권한에 비해 책임이 과다하다면 누구도 그러한 계약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책임범위와 책임량을 축소하는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민간부문, 즉 시장이 공공부문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이유다. 공공을 표방할수록 내적 모순이 커져이 쌓여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불법행위 책임 법리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중시하게 되고, 그 결과 위험의 효율적 관리라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은 사라지고 피해자 배상이라는 목적만이 남는다. ‘억강부약’이라는 신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생적으로 효율적 제도가 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제조물책임법보다 법리구성에서 현저히 열등하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안전도 제고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제조업자와 소비자 간의 배상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 4조 (면책사유)가 증빙이다.

제조물 책임법 4조는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면책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어디에도 명시적인 면책조항이 없다. 오로지 경영자, 관리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처벌만을 위한 법이다.//

<참고문헌>

신도철 (1998), 「불법행위법의 경제적 분석」, 『성곡논총』29집 2권.

Shavell, Steven (1987), Economic Analysis of Accident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Shavell, Steven (1993), "The Optimal Structure of Law Enforcemen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6, 255-287.

Brown, John P. (1973), "Toward an Economic Theory of Liability," Journal of Legal Studies 2, 323-349.

<정책세미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2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문제와 대안

■ 박 인 환

전 건국대 교수 /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문제와 대안

박 인 환

전 건국대 교수 / 변호사

1.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시행

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

- 0 2018. 12.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 4.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20. 5.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슴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 0 2020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희생자 김용균의 유족들이 국회 입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주도로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하고, 2021. 1. 26. 문 대통령이 공포하여 제정되었으며, 2022. 1. 27.부터 시행.
- 0 원래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었으나,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노동계 중심 여론의 압력을 등에 업고 거대 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형벌 구성요건의 명확성이나 구체성, 완결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 0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법 제1조)
- * 법의 직접 목적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가중 처벌.
- * 간접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별하여 가중 처벌.

0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별 차이가 없음 : 일반법과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것임.(법 제1조)

다. 주요 내용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법 제4조, 제5조)

*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각종 조치의무가 있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와 같은 조치의무가 있음.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법 제6조, 제7조)

*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을 병과 가능)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위와 같은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누범 가중처벌)

* 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중대산업재해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구분하여 부과.(단,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

- (3)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를 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법 제9조).
- (4)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법 제10조, 제11조)
- (5)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법 제15조 징벌적 손해배상제)
- (6)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16조)

라. 사업장 규모별 적용 범위(중대산업재해)

- (1)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2. 1. 27.부터 적용되고 있음.
-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 1. 27.부터 적용 예정.
(부칙 제1조,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3)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제외.(제3조, 5인 미만의 사업장 제외)

2.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실태(사례)

가. 첫 적용 사례(중대산업재해, 사망사고)

- (1) 사건 개요 : (주)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 0 2022. 1. 29. (주)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소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붕괴 사고로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조작하던 근로자 3명이 약 20m 높이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함.
- 0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서울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삼표산업은 근로자 수 93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고, 과거에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이 있음)
- 0 고용노동부가 2022. 6.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법적용 대상으로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인물들을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송치)

- 0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노동자 1명 이상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2) 사건의 쟁점 : 법조문의 불명확성

- 0 사건의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수사 대상(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을 누구로 볼 것인가?

- * (주)삼표산업 대표이사과 삼표그룹 회장
- * 실제 경영책임자가 아닌 바지사장에 대한 처벌 논란 가능성

0 경영책임자등의 기준

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각자 다를 경우에는 누가 경영책임자인가?

0 경영책임자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기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의무가 있음.

- * 사업(업무) 또는 사업장(장소)을 ‘지배’하는 자, ‘운영’하는 자, ‘관리’하는 자가 다를 경우 누구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가?
- * 하청의 경우 원청의 책임인가, 하청의 책임인가?

- 0 굳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도, 기업 CEO의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사고 결과에 대해 CEO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을 추가한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

- 0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특히 더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되는데,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 로펌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우려 비판.

(3) 기타 사례

- 0 2022. 1. 11.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시 화정 아이파크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로 6명의 작업자가 숨지고 1명이 다침.

- 0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 7. 31. 강릉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 무대 조명탑 철거 작업을 하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20m 높이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50인 이상 일반 사업장과 건설 공사 50억원 이상 건설업 해당 여부 조사)

- * 싸이(소속사 피네이션)의 처벌가능성.
- * 외주 하청업체 경영책임자, 원청업체의 책임.
- * 싸이의 개인 형사책임 : 싸이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 경영책임자의 사업 : 쇼 비즈니스 사업, 무대 철거사업.
- * 싸이나 소속사 피네이션의 도의적 책임.

나. 첫 기소 사례(중대산업재해, 급성중독의 직업성 질병 발생)

(1) 사건 개요 :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 0 2022. 6. 27. 창원지검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의 집단 독성 간염을 발생시킨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개월 만에 기소된 첫 사례)
- 0 지난 2월 노동자 16명의 집단 독성 간염이 발생한 두성산업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보건조치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한 혐의로 입건.
- 0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두성산업에서 발생한 독성 간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이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6명이 한꺼번에 독성 간염에 걸렸음)

(2) 사건의 쟁점

- 0 앞서 지난 2월 경남 창원시의 에어컨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과 김해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각각 16명과 13명 등 직원 29명이 급성 독성 간질환에 걸린 산업재해 사고 발생.
- 0 고용노동부에서 두 업체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 두 업체 모두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함유한 성분을 속여서 판매한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세척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지난 4월과 6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대표를 각각 검찰에 송치함.(이와는 별개로 경남경찰청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세척제 제조업체인 유성케미칼 대표를 구속 수사)
- 0 이에 대하여 검찰은 두성산업 대표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의견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대흥알앤티 대표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의견과 달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무혐의 처분하면서 그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 0 대흥알앤티는 사업장에서 13명의 급성중독자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장 내 근로자의 의견청취와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다만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 배기장치를 방치한 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함.
- *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다하였는가?
- * 관련법 조문(제4조 제1항)의 불명확성에 따른 해석상 혼선 가능성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실태 및 법 적용 현황

(1) 중대재해(사망) 사고 발생 실태

- 0 고용노동부가 2022. 7. 19.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에 303건의 업무 관련 사망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320명이 사망.(전년 동기간의 334건 사고, 340명 사망에 비하면 수치상 사망자가 약 5.9%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2건 가까이 사망사고 발생)
- 0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47건(155명), 제조업이 92건(9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기타업종은 64건(66명)으로 여전히 건설업이 중대재해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
- * 건설업계에서 사고가 줄었다고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팬데믹 사태 이후 건설업종의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이나 최근 광주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 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건설업계가 위축된 현실을 반영한다는 반론도 있음.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황

- 0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법 시행 이후 2022. 6. 13.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은 모두 83건으로 그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56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37건(중복 포함)이 입건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14건은 수사를 완료한 뒤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에 송치.
- 0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검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한 곳뿐이고,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건설사는 없음.

3.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가. 법체계상의 상호 모순

(1)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의 의미와 범위 중첩

0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산업재해의 의미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함.

0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함.

0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함.

(2) 처벌 범위의 중첩과 모순

0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제6조)

0 같은 사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게 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에 이르게 한 자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제167조)

0 같은 사안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징역형의 하한이 있으나 상한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한은 있으나 하한이 없음.

(3) 적용 범위의 차이 및 모순

0 중대재해처벌법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도 그 적용 대상 및 적용 범위의 차이가 너무 크므로 법 적용상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산업안

전보건법은 적용사업장의 범위를 대통령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를 조정할 여지가 전혀 없음.)

- 0 산업안전보건법은 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광산업, 원자력업, 항공업, 선박업, IT서비스업, 금융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사업지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어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소매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 및 방송업, 부동산업, 임대·연구개발·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협회·단체, 개인서비스업,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등, 국제·외국기관, 사무직근로자만 사용 사업장은 법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처럼 법 적용 배제의 근거가 없음.

나. 복잡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한 ‘명확성의 원칙’ 위배

(1) 사업주

- 0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 0 사업주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음이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임.
- 0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는 ‘개인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제반 의무를 개인으로서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게 부과하고 개인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를 경영책임자등과 구분하여 법인 또는 기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것은 아님.
- 0 산업계에서 널리 실시되는 원청과 하청의 구조 속에서 원청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련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법 제4조 제1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음.(원청과 하청 사이의 산업재해의 사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함.)

(2) 경영책임자 등

- 0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의 장도 이에 해당)
- 0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즉 경영을 대표하는 자.(CEO)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임
- 0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외에 이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동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부담할 수 있음.
- 0 그러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양자 모두 처벌될 수 있음.
- 0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개별 사안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의 행사나 그 결정에 관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이 또한 해석상 명확하지 않음.
- 0 결국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적용 대상을 모호하게 처리해서 실질적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다. 평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1) 적용 대상 기업의 차별

- 0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2. 1. 27.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산업재해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중소 규모의 사업체 즉, 상시 근로자 5

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 1. 27.부터 적용되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 0 더구나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또한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임.[대기업에 대한 불신과 보복 심리]

(2) 과잉 형벌의 문제(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

- 0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면 구성요건이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나 법의 적용 대상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넓고 의무가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0 또한 산업안전법상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는 직접 범죄 행위자보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임.
- 0 더구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에 병행하여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함으로써 중복 처벌의 문제와 함께 소송의 남발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부담이 우려됨.[전관예우 및 전문화된 대형 로펌]
- 0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소위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형량을 주로 살인 등 고의적 중범죄에 대한 처벌 방식인 ‘하한형’ 방식으로 규정한 점도 과도한 처벌의 근거로 지적되고 있음.(예를 들면, 형법상 고의범인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형을 두고 있지만 과실범인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 금고로 상한형을 두고 있음)
- 0 같은 산업재해 사건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형벌의 과잉이 우려됨.(예를 들면,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0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사건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하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물론이고 원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동일하게 책임을 지게 됨.

- 0 또한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를 따로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까지 부여한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중소 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의미가 없음.

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부담

- 0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각종 조치의무가 있음.(법 제4조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0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있음
- 0 위 필요한 조치 중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시행령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배치하고,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하는 조치 등이 추가됨.
- 0 위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CEO)는 사업경영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에 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대한 책임까지 과중하게 지게 됨.(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의무)
- 0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사고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담당 실무자

외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켜 포괄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나, 경영책임자는 사업의 설정이나 방향성 결정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산업현장의 거의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무리한 부담임.(경영책임자의 과도한 의무부담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마. 중소 규모 기업체의 비용 부담 가중

- 0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 규모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작업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 위와 같은 제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전시설 설치와 장비의 구입 등 추가로 적지 않는 비용이 투자되어야 할 것임.
- 0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대기업과 비교하면, 그 동안 안전 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 및 보건조치 비용을 조달할 여력이 없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했던 중소 규모의 기업체에 위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갑자기 부과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부가적인 비용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임.
- 0 실제 2021년 기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80% 정도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산업재해 예방시스템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

바. 법률의 위헌성 문제 : 정치적 포퓰리즘 입법

- 0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따로 규정하여 모두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서 중대재해에 대해서만 따로 엄격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중복처벌금지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성이 높은 정치적 입법이라는 지적들이 많았음.
-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태안화력발전소의 근로자 압사 사고 등 특정 사건을 일반화하여 입법 포퓰리즘에 의한 인기영합 차원에서 법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치중하여 졸속으로 법률을 제정한 것임.
- 0 경제계에서는 입법 초기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력한 기업처벌법으로 기업 환경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특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CEO)에게 의존도가 높은 중

소 규모 기업의 경우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정치입법이라고 비판하는 등 법 적용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 0 나아가서 정부가 사업주나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국민 전체의 부담을 가져오는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한 점에 비추어 정치적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임.

4. 결론 : 대안과 관련하여

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올바른 방향 정립

- 0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중대재해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수단이 되어야 함.
- 0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가중 처벌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 0 그러나 중대산업재해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해사고 발생은 건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중소 규모의 기업이 대부분(80%)을 차지하며, 재해사고의 발생 원인도 주로 근로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0 이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산업재해 관련 안전사고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특히 이를 위하여 중소 규모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 작업 환경에 적응하는 숙련 근로자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그들에 대한 안전장비의 보급 및 안전교육이 강조되어야 함.

- * 처벌만능주의 극복 : 사형제 존속론과 폐지론
- * 각종 사고 관련 보험의 존재이유 : 사고의 확률, 법인 단체보험.
- * 입법 포퓰리즘의 폐해.

나. 몇 가지 대안 모색

(1) 징역형 하한의 폐지

- 0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위반으로 1명 이상 사망자가 생긴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하면 처벌이 크게 강화된 것임.
- 0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2월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산업안전 관련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음.
- 0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11개국의 산업안전 관련 법률을 분석한 결과,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평균이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원 내외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벌보다도 낮음.
- 0 이에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한편 경영자에 대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징역형 하한의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의견을 냄.
- 0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처벌 수위가 낮고 처벌 범위도 좁아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처벌 하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임.

(2) 중대재해 예방 기준의 고시 : 경영책임자 처벌 감경 방안 마련

- 0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나 이들에 대한 처벌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기업인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0 이에 법무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0 해당 사업체가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감지 및 조치 지능화 등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위 방안은 일부 야당 의원들에 의하여 입법 제안되기도 했으나 최근 철회되었음.

(3) 사고발생시 근로자 등 '종사자의 무과실' 원칙 적용

- 0 산업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의 상당 부분은 근로자의 부주의하거나 불안정한 행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0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휴먼 에러의 원인과 예방대책' 자료에 의하면, 일상에서의 휴먼 에러(인적 오류) 발생률에 대해서 '사람은 하루 동안 근로를 하며 약 2만 번의 행위를 하고, 그 중 2번 이상의 실수(에러)를 범한다고 한다. 이러한 실수들 중에서 80%는 감지되지만 나머지 20%는 감지가 되지 않으며, 감지되지 않은 20%의 실수 중 25%는 심각한 오류로 이어져 큰 사고를 일으킨다.'고 기술함

- 0 이런 이유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인간의 불안정한 행동 즉, 인적오류로 인한 행위가 전체 산업재해의 8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인적오류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재해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 처벌법 실태조사'에 의하더라도, 현장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에 대해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라고 답변한 비율이 8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0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기업들의 산업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한 비용 투자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작 해당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필수적인 안전수칙 이행에 대한 의무사항들은 방관하고 있는 노동현장 및 이와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 제고의 필요성.

- 0 전체 산업재해의 80%~90%를 차지하는 근로자의 과실(인적 오류)에 기인한 사고에서 근로자의 과실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만 강조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기업 때리기’ 식의 정책만 고집하기 보다는 기업과 근로자의 쌍방향에서 보완책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음.

- *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 양형을 강화하였으나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9년 39명, 2020년 36명으로 좀처럼 감소세가 보이지 않았으며,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추락과 부딪침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사고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것으로 보임.

0 최근 완비된 중대재해처벌 관련 법령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의 과실 즉,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업 때리기’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계속 강화되어 왔지만 산업재해는 결코 줄지 않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음.

0 따라서 중대재해 등 산재사고 발생의 경우 근로자 측의 과실을 감안하여 일정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의 면책이 가능한 규정을 새로 둘 필요가 있음.(사고발생시 사업주 등 처벌의 전제로 ‘근로자의 무과실’ 원칙 적용)

- * 실제 건설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비숙련 초보 근로자의 증가 등 흔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숙련공의 비율이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비숙련공이라도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고, 현장에서 적당히 시간만 보내면서 일당을 받아가는 식의 근무 형태도 적지 않으며 구비된 안전모 등 안전장비와 안전규칙을 아예 도외시하는 근로자도 있을 정도이고, 더구나 건설 현장을 장악한 노조의 횡포로 인하여 작업 환경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음.

(4) 중대재해 예방기금의 설치

0 중대재해의 발생시 회사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벌 보다 중대재해 발생 회사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금을 내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순환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

0 예를 들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의 경우 전년도 영업이익의 1%를 중대재해 예방기금으로 적립하게 하고 그 기금으로 재해 발생이 비교적 많은 5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시설 확보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재해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낮추고 중대 재해로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5) 정부의 책임과 의무

0 법 제16조에 의하면,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등 의무가 있음.

0 또한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지원이 요구됨.(특히 중소 규모의 기업체)

* 기업이 감당해야 할 산업재해 방지 비용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6) 중대재해처벌법의 폐지 : 경제 형벌의 최소화 및 규제개혁

0 졸속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으며, 기업의 경제 활동에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잘못이나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고의가 아닌 과실)을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무거운 경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을 최소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의 개혁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0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강조하면서 규제를 혁파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인이라고 보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로 했으며, 한 총리도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을 비롯한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0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굳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 등 각종 산업 재해에 대한 형사적 규제가 완비되어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잉입법이고 대중융합적인 포폴리즘 입법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임.

<정책세미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3

중대재해처벌법의 민사책임 문제와 대안

■ 전 삼 현

승실대 법학과 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의 민사책임 문제와 대안

전 삼 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I. 문제제기

2021년 1월 8일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많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재해 발생시에 기업과 경영자를 동시에 강하게 형사처벌하고 5배의 징벌배상까지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제정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시행된지 7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법개정 요구가 많은 법률 중에 하나이다. 이 법은 입법 당시부터 이념에 함몰된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들이 많았으며,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해관계자들 역시 이 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개정도 요구하고 있어서 입법정책상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사정변경의 원칙상 그 어느 법률보다도 서둘러 전면적 법개정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처럼 입법정책상 시기상조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개정논의가 전례없이 활발한 이유는 형사처벌 및 민사처벌의 수위가 높아 사업활동이 위축되고 보건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이 증가함에도 여전히 산업재해발생 건수에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즉, 보호법익이 없이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만 하는 경찰국가적 법률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법률효과는 낮은 반면 법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비용을 급증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계약자유 원칙이나 행동의 자유, 자기책임원칙이 침해받는 등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법치주의를 훼손시킨다는 비판도 가하고 있다.

특히, 민사책임과 관련해서는 영미법계에서 형사처벌 대신에 민사벌적인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 징벌배상제도를 엄격한 형사처벌제도와 함께 입법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입법적 결함이 큰 것은 사실이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적용을 받지 않지만 당장 5개월 후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그 동안 법준수비용이 과다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당장 교도소 담장을 걸어야 하고 파산위기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들의 사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원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민사책임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향후 법개정과 관련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중대재해처벌법상 민사책임 규정 검토

1.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민사책임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상 민사책임과 관련해서는 법 제15조(손해배상책임)⁶⁾에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 제15조 제1항). 첫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손해발생 원인행위자이어야 한다. 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부재 중인 경우 안전담당자 등 실무자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주체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민사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의도적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켰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현장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는 형사처벌규정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결함의 여지가 크다고 본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했어야 한다. 즉, 이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어야 한다. 넷째, 중대재해가 발생되었어야 한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위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 네가지 요건을 충족했으면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벌배상을 해야 한다. 물론,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6)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징벌배상 책임은 지지 않게 된다. 다만, 민법상의 실손해 손해배상책임도 면제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법 제15조 제1항)

그리고 징벌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재판부는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②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③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④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⑤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⑥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⑦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를 고려해 재량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15조 제2항). 이와 관련해 특이한 점은 사업주는 징벌배상 책임의 주체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손해배상액 산정시 사업주의 재산상태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이 고려된다는 점이다. 입법적 결함이 의심되는 규정이다.

2. 중대재해에 대한 민사책임의 유형별 검토

중대재해처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에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야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390조⁷⁾에 의거한 채무불이행손해배상 책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중에서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⁸⁾의 불법행위책임의 한유형이라고 해석된다.

7)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393조⁹⁾에서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알 수 있는 손해에만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채무불이행 민사책임원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63조).

즉, 중대재해에 대한 손해배상범위와 관련해 징벌배상이 부과되는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알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현장에 없었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내에 현장에 없었어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책임규정을 두지 않는 한 민사책임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간에는 법감정적 괴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상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¹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763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과실상계에 관해 인정하는 규정이나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없어서 법적용상의 혼란이 예상된다.

3. 손해배상청구권자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자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중 다른 피해자의 침해결과로 피해를 입은 간접적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의 명문규정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법적용상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민사책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행정규제법으로 공법상의 제재만 규정해야 하는데 민사법적인 징벌배상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법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법으로서의 기능만 하고 손해배상 등 사법적인 기능은 민법에 맡기는 것이 법적용상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손해배상책이 주체와 관련해서도 법인, 기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불법행위 내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소송진행 중 소송참가자 수가 급증해 심리기간이 길어지면서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10)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III. 중대재해처벌법상 민사책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책임주체

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해서 볼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이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주체는 1항 단서 조항에서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것을 보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책임발생 원인행위자와 책임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책임주체가 아닌 자연인의 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시 책임발생 원인행위자의 재산이 많으면 책임주체의 배상액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2항에서 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사업주의 재산상태, 사업주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의 경제적 이익이 크고, 사업주의 재산이 많고, 사업주가 피해구제나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징벌배상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비례책임을 지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회사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후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역시 불분명하다.

(2) 징벌배상면책 요건의 모호성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민사책임 규정은 과거 법적 분쟁에서 실손해액의 산정을 두고 법적 공방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으로 배상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또한 특이한 점은 책임성립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어야 5배 징벌배상책임을 지는데, 그 면책요건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성립요건과 면책요건의 주체가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즉, 누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회사가 징벌배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가 불투명 하다는 것이다.

입법의 취지상으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

우에는 징벌배상책임을 면하는 규정을 두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행규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의무위반을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들이 주의와 감독을 잘 했으면 징벌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의무를 위반했는데 주의와 감독을 잘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징벌배상면책 조항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문화된 조문인 것이다.

따라서 제1항에서 의무위반의 주체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건·안전 담당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징벌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다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배상액의 격차발생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시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배상액 산정 시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②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③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④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⑤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⑥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⑦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를 고려해 재판부가 재량으로 배상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15조 제2항).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나 법인이 재산상태가 양호하면 배상액의 규모가 크고 사업주나 법인의 재산상태가 열악하면 배상액 규모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기업이 주체가 되는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배상액이 크고,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는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배상액이 적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향후 중소기업자의 인력수급이나 서비스 이용시 시장에서 중소기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법률이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4) 징벌배상제의 이중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 내지는 기능이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공법적 기능만 있고 사법적 기능은 없다는 견해와 공법적 기능과 사법적 기능 모두를 목적으로 한다는 견해로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공법적 기능만을 인정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형사처벌규정과의 관계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¹¹⁾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서 위헌의 여지가 있다.

물론, 이처럼 징벌배상제가 공법적 기능만 한다는 견해¹²⁾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재적 기능, 억제적 기능, 법의 실시기능 등과 같이 공법적 기능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사법적 기능인 보상기능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³⁾

이처럼 징벌배상제가 공법적 기능을 원칙으로 하고 민사법적 보상기능을 보완적으로 한다하더라도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배상을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¹⁴⁾

이와 관련해 미국 판례를 검토해 보면 1967년 미연방 제2항소법원은 Roginsky v. Richardson-Merrell 사건 (378 F. 3rd. 832, 2d. Cir., 1967)에서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하여 과다하고 제한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기업을 소멸케 하는 행위”라고 판시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성 논쟁을 불러온 바 있다. 즉,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외에도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미연방수정헌법 제5조에서 언급한 이중처벌금지조항에 위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Ingraham v. Wright 사건(430 U.S. 651, 1977)과 In Palmer v. A. Robins 사건 (684 P. 2d 187, Colo., 1984)에서 법원은 미연방수정헌법 제5조가 형사적 제재에 있어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기 위해 적용되어 왔으므로 이 조항은 오로지 형사처벌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처벌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 이 사건은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외에 다시 연금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투었다.¹⁵⁾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일정한 범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하여 형벌이나 공무원법상의 징계 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급여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은 형사처벌에 한정된 원칙이라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결정만으로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벌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보기

11)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12) 장덕조, “징벌적 손해배상의 보험보호에 관한 논의와 그 시사”, 상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2003), 한국상사법학회, 270면; 김용대, “미국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배상제도”, 「외국사법연수논집 17」 재판자료 제48집 (법원행정처, 1999), 9면; Montgomery Ward v. Wilson, 339 Md.701, 733-34, 664 A.2d 916, 932 (1995); Philip Morris v. Angeletti, 358 Md. 689, 774, 752 A.2d 200(2000).

13) 이점인, “징벌적 배상제 도입방안”,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연구보고서 (2005.12), 11면.

14) 헌법 제13조 제1항.

15) 헌재 2002. 7. 18. 선고 2000 헌바 57(전원재판부 결정).

는 어렵다. 이것은 징벌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연금미지급에 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엄격한 추상적 위험범의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추가로 기업에게 과도한 징벌배상까지 부과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Roginsky v. Richardson-Merrell* 사건의 판결내용처럼 기업을 소멸케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위헌의 여지가 크다고 본다.

(5) 징벌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의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책임도 엄격히 부과하면 산업재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영미법계의 사례를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 이외에 추가로 징벌적 의미를 갖는 추가배상을 명령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악의적 불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인 것이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악의적인 불법행위”라는 표현 대신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이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고의적 불법행위로서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행위”, 즉 고의보다 더 악성이 강한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미국 판례에서도 가해자 측의 “악의(malice)”, “사기적 또는 사악한 동기(fraudulent or evil motive)”, “의식적(conscious) 또는 계획적(deliberate)으로 타인의 권리 내지 이익을 무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존재¹⁶⁾”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법관이나 배심원이 이를 “악의적 불법행위”로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물론, 형행법상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가 없어 재판부가 어떻게 판례를 형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는 하겠지만 징벌배상을 인정하는 요건이 미국보다는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성립 요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이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 대신에 “악의적으로 법이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6) 타 법률과의 형평성

16) H. Stoll, "Penal Purpose in the Law of Torts",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1970), p. 99; Prosser and Keeton, "The Law of Torts", 5rd ed, pp. 9-10.

우리나라 현행법상 징벌배상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총 22개이다. 이 중에서 3개 법률은 손해액의 5배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개 법률은 손해액의 3배까지만 징벌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징벌배상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은 중대재해처벌법(제1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3조), 자동차관리법(제74조의2)이다.

그리고 손해액의 3배를 한도로 하는 징벌배상법률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5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7조의2), 제조물 책임법(제3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의2), 환경보건법(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6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특허법(제128조), 상표법(제110조), 디자인보호법(제115조),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제34조의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등이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대다수인 3배 징벌배상보다 소수인 5배 징벌배상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5배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생각건대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법률의 성질상 제조물책임법과 환경보건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개선방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민사책임 규정은 입법론적으로 결함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형사벌과 행정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민사책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적인 공법으로서 국가가 산업안전보건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도 공법적인 기능을 하는 규정만 법률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의 민사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법체제 상 많은 혼란을 가져 오고 있다. 따라서 최선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능을 산업안전보건법처럼 공법으로 한정하고 민사책임에 관한 15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제15조의 규정을 삭제할 수 없다면 최소한 법적 정합성을 갖추 수 있도록 입법적 결함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업주는 징벌배상 책임의 주체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손해배상액 산정시 사업주의 재산상태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민법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¹⁷⁾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763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피해자의 의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과실상계가 어려워 형평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본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인 등이 면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법 제15조 1항 단서를 해석해 볼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해 회사가 징벌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경제적 이익이 크고, 사업주의 재산이 많고, 사업주가 피해구제나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징벌배상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나 법인이 재산상태가 양호하면 배상액의 규모가 크고 사업주나 법인의 재산상태가 열악하면 배상액 규모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기업이 주체가 되는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배상액 규모가 크고,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는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배상액 규모가 작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중소기업자의 인력수급이나 서비스 이용시 시장에서 중소기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법률이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사업주의 경제적 이익이 크고, 사업주의 재산이 많고, 사업주가 피해구제나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을 배상액 산정시 고려하도록 한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성립 요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이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은 미국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온 징벌배상 책임성립 요건인 “악의적 불법행위”보다 완화된 만큼 남소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를 “악의적으로 법이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배상 한도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법률의 성질상 제조물책임법과 환경보건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상 형평성 차원에서 징벌배상책임을 3배로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17)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IV. 결어

2000년대 들어 영국·호주·캐나다 등이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예방효과는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¹⁸⁾. 예를 들어 영국은 근로자 십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기업과실치사법 시행 직후 약간 감소하는 듯했으나 3년이 경과 한 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호주와 캐나다도 기업 처벌강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처벌강화로 인한 효과가 불명확하다고 한다.

이처럼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자 구제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것은 나름 이해가 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벌과 징벌배상책임 부과를 목적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것은 향후 법적용상 많은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통일해 단일법률로 제정하고, 민사책임규정은 삭제해 법적인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18) 영국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 2008년 시행하였고, 호주와 캐나다는 200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을 강화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2020년 12월 17일자 보도자료, “한국 산업재해 기업 처벌 이미 주요국 최고 수준, 처벌 강화 효과 의문”에서 재인용하였음).

<정책세미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4

건설업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 상 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업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22. 0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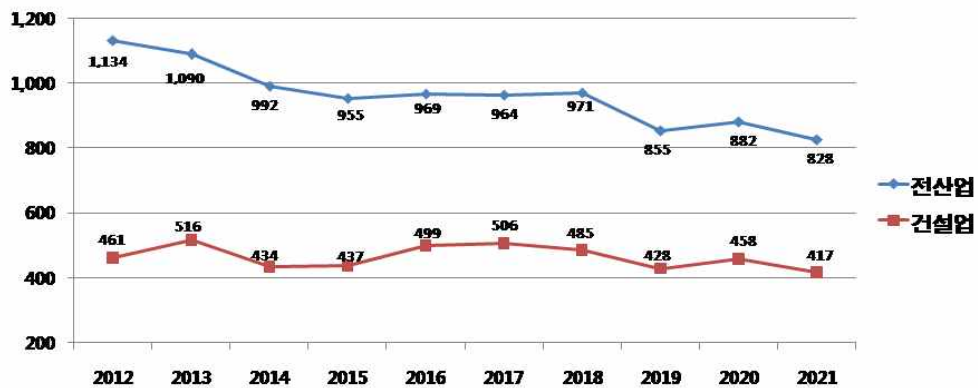
INDEX

- I. 건설업 산재발생 현황
- II. 산재저감을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
- III. 건설업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 IV. 개선방향

I. 건설업 산재발생 현황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자 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산업(A)	1,134	1,090	992	955	969	964	971	855	882	828
건설업(B)	461	516	434	437	499	506	485	428	458	417
비율(B/A, %)	40.7%	47.3%	43.8%	45.8%	51.5%	52.5%	49.9%	50.1%	51.9%	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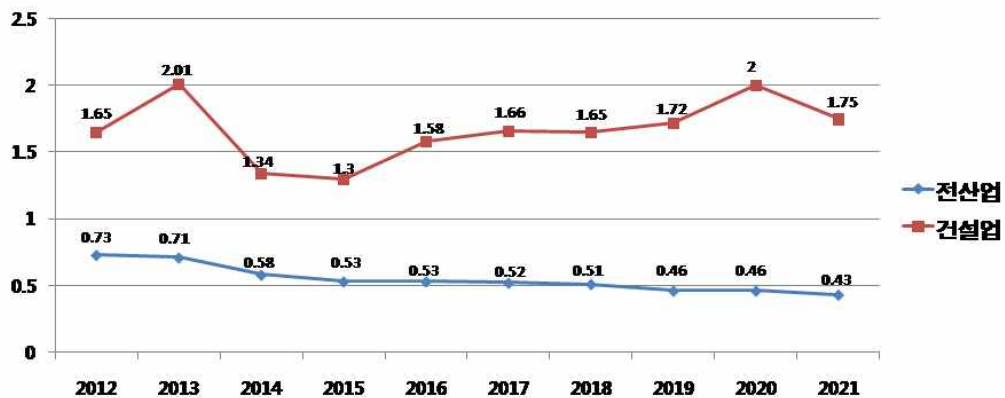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2 -

I. 건설업 산재발생 현황

최근 10년간 사고사망만일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산업(A)	0.73	0.71	0.58	0.53	0.53	0.52	0.51	0.46	0.46	0.43
건설업(B)	1.65	2.01	1.34	1.30	1.58	1.66	1.65	1.72	2.00	1.75
대비(B/A)	2.3 배	2.8 배	2.3 배	2.5 배	3.0 배	3.2 배	3.2 배	3.7 배	4.3 배	4.1 배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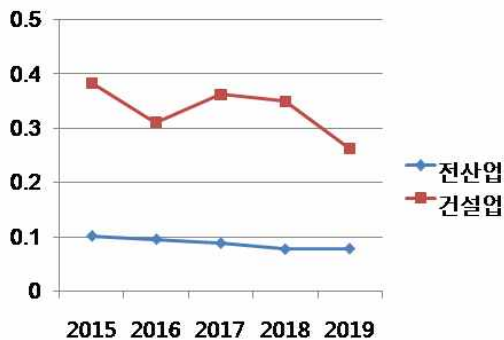
- 3 -

I. 건설업 산재발생 현황

국가별 사고사망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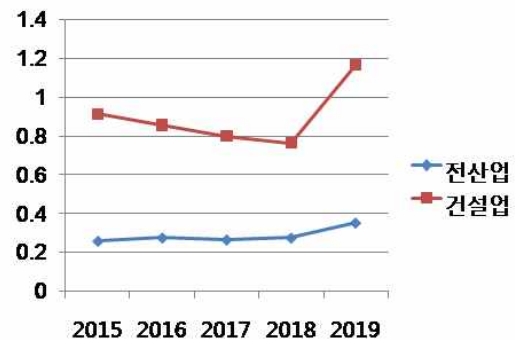
< 독 일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산업(A)	0.102	0.096	0.089	0.078	0.079
건설업(B)	0.383	0.310	0.362	0.349	0.262
대 비 (B/A)	3.8 배	3.2 배	4.1 배	4.5 배	3.3 배



< 프랑스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산업(A)	0.257	0.274	0.264	0.274	0.353
건설업(B)	0.913	0.854	0.798	0.763	1.167
대 비 (B/A)	3.6 배	3.1 배	3.0 배	2.8 배	3.3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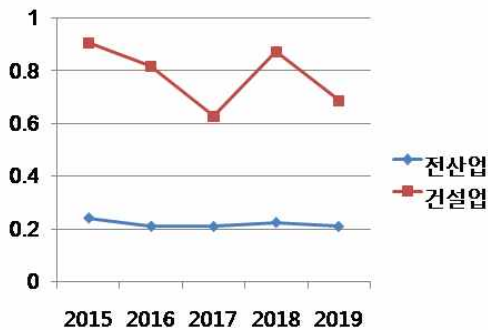
- 4 -

I. 건설업 산재발생 현황

국가별 사고사망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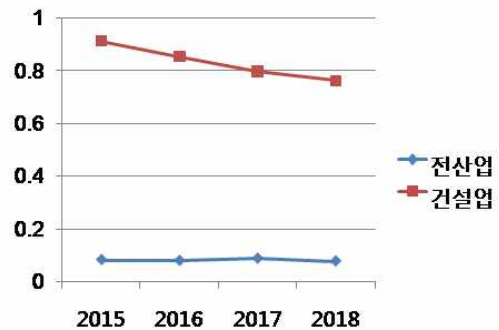
< 이탈리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산업(A)	0.242	0.211	0.210	0.225	0.210
건설업(B)	0.906	0.819	0.629	0.874	0.687
대 비 (B/A)	3.7 배	3.9 배	3.0 배	3.9 배	3.3 배



< 영국 >

연도	2015	2016	2017	2018
전산업(A)	0.083	0.080	0.088	0.078
건설업(B)	0.913	0.854	0.798	0.763
대 비 (B/A)	2.6 배	2.6 배	2.6 배	1.9 배



- 5 -

Ⅱ. 산재저감을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

안전 강화비 지급—5건설

- 본사 차원에서 직접공사비 약 2% 정도를 각 현장에 “안전강화비” 로 별도 지급
- ※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 직접공사비의 약 2% 수준

안전 체험학교 운영—6건설, 8건설, 10건설, 5건설

- 자사 안전·시공인력 및 협력업체 관리자 안전교육
- 체험시설, VR 교육시설 등 활용 안전교육



- 6 -

Ⅱ. 산재저감을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

CEO 주관 특별점검—8건설

- 전 현장 자사 임직원 및 협력사 임원 특별 자체점검 실시
- 중점 체크리스트 바탕으로 안전점검 실시 및 매주 점검결과 조치유무 확인 등 피드백 반영

무사고 현장 포상제도 운영—5건설

- 월별 무사고 현장 및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현장 대상 포상제도(포상금, 커피차 등) 운영
- 안전관리자 및 현장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관심 제고 및 자율안전관리 문화 형성



- 7 -

Ⅱ. 산재저감을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

스마트안전장비운영 - L건설, G건설

- 흙막이 주변 지반 침하 - 붕괴징후 발생 시 경보 발생
- 크레인 - 펌프카 아웃트리거 침하 시 경보 발생
- 밀폐공간, 지하충구간 등 고위험작업구간 360° 회전 CCTV 운영

◆ 적용 사례



- 8 -

Ⅲ. 건설업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1.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의 제약요인

국내외에 산재한 건설현장

【2021년도 업체당 건설현장수】

시평순위		전체	1~10	11~30	31~50	51~100	101~300	301~500	501~1,000	1,001 이하
1사당 현장수	계	17.3	263.4	111.8	71.3	48.1	35.0	25.1	19.2	10.9
	국내	16.9	194.7	106.2	66.6	47.0	34.5	24.9	19.2	10.9
	해외	0.4	68.7	5.6	4.7	1.1	0.5	0.2	0.0	0.0

- 9 -

Ⅲ. 건설업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건설노동

● “현장 인사권이 건설노조에 넘어가 있는 상황”

- ✓ 현장개설시 현장사무실에 찾아와 노조에 가입된 형틀목공 채용 강요하면서, 채용하지 않으면 노조원들 보내서 작업방해 할 것이라 협박
- ✓ 자기노조에 등록된 장비사용 강요, 이에 불응하자 현장출입구 봉쇄하고 레미콘 차량 등 진입 방해
- ✓ 노조형포를 경찰에 신고하자 일감을 주는 건설사마다 찾아다니며 업체변경 강요하여 결국 도산(조선일보, '22.7.4) ⇒ 노조가 건설현장의 하도급 계약 좌지우지

- 10 -

Ⅲ. 건설업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근로자 부주의

-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의 경우,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가 70.4%
- 음주작업, 안전시설 해체 등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비율이 상당한 수준
- 법에 정해진 안전교육 실시해도 교육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설업체들의 하소연

- 11 -

Ⅲ. 건설업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2.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따른 예로사항

- ✓ **경영책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CSO 요건 불명확**
 -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법 제2조)
- ✓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불명확**
 -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 제4조)
-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에 비용소요 큼 ⇒ 비용 미반영**
-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공사는 2년 시행유예 ⇒ “공사금액” 정의 없음**
 -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 포함여부에 대해 현장 혼란
 - ※ 계약금액이 40억원이고, 관급자재비가 15억원인 공사 ⇒ 관급자재비 포함하면 당장 법적 적용 대상이고, 관급자재비 제외하면 2년후 시행

- 12 -

Ⅳ. 개선방향

1. 건설현장 안전확보 토대 마련

- **안전관리비용 현실화**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 지원 확대
-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처벌불이익**



- 13 -

IV. 개선방향

2. 법령 개정방안

【법】

구 분	현 행	개정방안
중대재해	▲ 1명이상 사망	▲ 요건강화(예: 동시에 2명이상 사망)
경영책임자	▲ 사업을대표하고사업을총괄하는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CSO 요건 명확화 (예: 앞의 사람으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
안전보건 확보의무	1.~3. (생략)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현행과 같음) 〈삭제〉
경영책임자 처벌	▲ 하한형 형벌(1년이상징역)	▲ 상한형 형벌(○년이하징역),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 폐지

- 14 -

IV. 개선방향

【시행령】

구 분	현 행	개정방안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대상	▲ 시공능력 200위 이내 건설업체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의무	▲ 시공능력 50위 이내



- 15 -

감 사 합 니 다 !

- 16 -

<정책세미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 1

주객전도(主客顛倒)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 조 봉 수

해성기공 안전팀 이사

주객전도 (主客顛倒)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2022.08.29

조봉수 해성기공 안전팀 이사

INDEX CONTENT

1.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의 시각
2. 사망사고 현황 및 과거 감소사유(추정)
3. 권한에 맞는 역할과 책임(정책제언)

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 현장의 시각

1) 긍정적 시각 및 평가

- 법 취지에 대한 공감 및 동의
-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기대감 증가
- 사업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변화
-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증가
-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인력확충
- 안전/보건관리자 일자리 창출(처우개선 등)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 현장의 시각

2) 부정적 시각 및 평가

-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전략 우선수립
 - 대형 법무법인 로펌에 업무위임 / 사고대비 증빙 서류 대폭 증가(예방 보다 서류중심 업무전환)
- 사업주 산업재해예방 인식변화 보다 법적 대응에 대한 인식변화가 더 큼
- 예산 증가 보다 업무량 증가가 더 큼
- 안전/보건관리자 인력확충 어려움(중소 건설사 인력채용 불가능에 가까움)
- 사망사고 감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부분적 감소는 있어도 대폭적인 감소는 어렵다(건설환경 및 인프라 선행 되어야~)
- 산업재해 예방법이 아닌 처벌법
- 보호대상자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행항목별 최소 한계점 및 세부내용이 불명확 하다.
-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발주자 지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공사에 직접적 관여or지휘 해서는 안된다.(처벌에 포함)
- 50억 미만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사전대응은 불가능 할 것이다.

2. 사망사고 현황 및 과거 감소사유(추정)



2. 사망사고 현황 및 과거 감소사유(추정)

1) 2014년 감소사유(추정)

■ 2013년 대국민적 관심사고

- 화학물질 유출사고 급증
- S전자 불산가스 유출: 사상자5명(사망1인)
- S엔지니어링 물탱크사고: 사상자15명(사망3명)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 정부차원의 변화 및 적극적 대처

- 청와대주관 간담회 개최(현장 목소리 직접청취)
- 관련부처의 여러가지 대책을 수립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사고의 증가
- 근본적 대책수립을 위한 청와대 주관 민관회의
- 참여자: 건설사, 노총, 정책연구원, 교수, 공단

2) 2019년 감소사유(추정)

■ 2018년 대국민적 관심사고

-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사망

■ 정부차원의 변화 및 적극적 대처

- 2018년 1월 10일 국민생명 지키 3대 프로젝트 추진 문제인 대통령 신년사 발표
- 2019년 3월 19일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종합대책 발표

2. 사망사고 현황 및 과거 감소사유(추정)

1) 청와대 주관 재해예방 토론회(2013. 08. 14)

■ 목적

- 연속으로 발생하는 국내 대형 사고관련 각종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후진적 사고가 지속적 발생함에 따른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한 청와대 차원 각 부처 및 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재해예방 정부 정책 방향설정 목적

- 총리 급 이상의 컨트롤타워 필요
- 최저가방식의 입찰제도 폐지필요
- 발주처 책임강화 필요
- 적정공기 산정에 관한 기준마련
- 건설현장 다단계 구조 개선필요
- 선진국 벤치마킹 필요
- 전문건설업 재해율 관리 필요
- 안전시설 및 조치 등을 전문건설에게 전가금지 필요
- 기타: 건설업본사 안전전문가 배치 법제화 등

2. 사망사고 현황 및 과거 감소사유(추정)

1)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 총리 급 이상의 컨트롤타워 필요

-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는 누구인가?
- 예) 고용노동부가 최저가방식 입찰제도(민간포함) 폐지 가능한가?

■ 발주처 책임강화 필요: 권한과 이익대비 책임은 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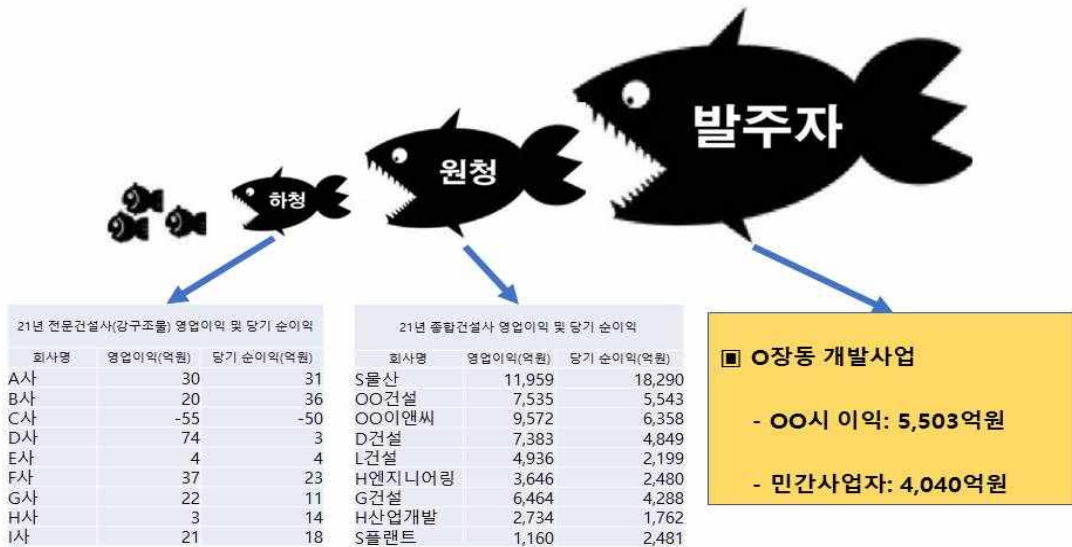
■ 적정공기 산정에 관한 기준마련: 공공공사 2020년 최초 마련 / 민간공사 적용 및 실효성 의문

- 건설현장 다단계 구조 개선필요: ?
- 선진국 벤치마킹 필요: 실효성에 대한 의문(적용이 용이 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
- 전문건설업 재해율 관리 필요: 현재까지 관리되지 않음
- 안전시설 및 조치 등을 전문건설에게 전가금지 필요: 불공정 거래 여전
- 기타: 건설업본사 안전전문가 배치 법제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일부 개선

★ 건설업 KOSHA MS(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폐지 논란

-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공단에서 1년 단위 사후심사 및 3년 단위 연장 심사
-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을 확대되어야 할 시기에 고용노동부에서 폐지 방향진행(시대적 역행)

3. 권한에 맞는 역할과 책임(정책제언)



3. 권한에 맞는 역할과 책임(정책제언)

1)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방향 제언?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근본적 체계 변화 필요

- 예)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함에 있어 고의적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 처벌, 즉 안전보건경영 체계구축에 중점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변화
- 설계 안전성평가(DFS)에 대한 실효성 강화가 필요
 - ☞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란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안전보건대장 대한 실효성 강화가 필요(산안법 67조)
 - ☞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 ☞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3. 권한에 맞는 역할과 책임(정책제언)

2)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방향 제언?

■ 권한에 맞는 책임과 역할 반영 필요

-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정부의 책임부분을 강화 할 필요성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권한과 금전적 이익에 비례한 책임을 강화(발주자 책임 반영)

■ 산업재해예방 세금 신설(부가가치세 처럼 적용하여 전산업 적용가능)

- 직접적인 생산과 연계된 만큼의 산업재해예방 세금을 운영하여 기업체에서 최소한의 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 산재예방활동에 이 기준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고의성으로 처벌

易地思之

바꿀 역

땅 지

생각 사

대명사(이, 그) 지

역지사지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본다.



2009년 쌍용차 파업사태

기업체가 어려워 지면 그 피해는 사업주에게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다.(상생노력)

3. 권한에 맞는 역할과 책임(정책제언)

3)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방향 제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페지가 아닌 확대정책 필요 (임의 인증 -> 의무인증 전환)

- ◆ 2000년 건설업KOSHA 18001 인증규칙 제정
- ◆ 2007년 11월 22일 전문건설업 KOSHA 18001 최초 인증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18001)] 인증현황 (2019.12)

총 팔			발주기관			종합건설			전문건설		
유지	취득	취소	유지	취득	취소	유지	취득	취소	유지	취득	취소
109	181	69 (중지 3)	13	19	6 (중지 3)	22	34	12	74	128	54

- 국내 종합건설업 약 10,000개사 / 인증사는 0.3% 미만
- 국내 전문건설업 약 50,000개사 / 인증사는 0.2% 미만

<정책세미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 2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

■ 임 우 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임 우 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1 서론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단식농성, 노동·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 없이 졸속으로 제정되어 법률의 절차·내용·효과성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법률 제정당시 법무부, 법원행정처 및 관계부처등의 다양한 조항에 대한 위헌성 문제제기등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소지가 아주 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유해위험방지의무(박주민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인과관계 추정 조항(박주민 의원안:증거인멸·현장훼손 및 과거재해발생사실등 인과관계추정과 무관한 사항) 등 일부규정만 삭제되고, 많은조항들이 충분한 검토없이 입법화 되었음.
- 우리나라 산안법의 처벌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며, 안전선진국 대부분은 중처법과 같은 엄벌주의 입법보다는 사전예방 정책의 효율화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수준(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은 대부분의 선진외국보다 높은 수준.
 - * (한국) 7년 이하 징역, (영국·싱가포르) 2년 이하 금고, (독일·프랑스·캐나다) 1년 이하 징역, (미국·일본) 6개월 이하 징역.
 -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법인에 대해 상한없는 벌금을 부과하는 반면 경영책임자등 개인의 책임은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7년 법 제정 후 2020년 12월까지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28건에 불과하며 법인과실치사법 도입에 따른 사망자 감소는 거의 없다고 알려짐.
 - 중처법 시행일은 1.27부터 7.25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사망자수는 오히려 전년대비 2명증가하여 현재까지 중처법 시행의 효과를 단정하기 어려움.
- 중처법은 처벌의 과도성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개념이 다수 존재하고, 특히 경영책임

자의 안전확보의무와 관련된 내용중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모호함. 이에 예방의지가 우수한 사업장에서조차 누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하여야 하는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기치 않은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임.

- 최근 경총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처법 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안전투자를 늘린 기업이 대폭 증가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응답기업 10곳 중 8곳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내용 및 책임범위 구체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함.
- 중처법의 많은 내용들은 국내 유수의 로펌들조차도 해석하기 어려워하고, 사업장의 안전 전문가조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최근 신정부하에서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추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법률자체의 많은 흠결과 시행령 위임근거 부족으로,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하루속히 입법보완이 이루어져 할 것임.

2 법령의 문제점

<1> 책임주의 및 평등의 원칙 위배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보다 가중처벌할 규범적 근거 없이 경영책임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형법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 중처법이 산안법보다 중하게 처벌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처벌의 규범적 근거가 필요한데, 보호법익측면에서 실제로는 산안법의 내용과 동일·유사하거나 오히려 불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산안법보다 약한 경우도 많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개선·시정 명령 이행조치 의무내용은 산안법상 사업주 준수규정으로 위반의 정도가 다르지 않음.
 - 중처법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중 사망의 경우는 산안법상 중대재해와 동일하게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업성 질병의 경우는 산안법*보다

대폭 완화시켜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 규정한 중증도 규정도 없음.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경영책임자 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위험성평가 실시, 전문인력 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 기준 마련)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은 산안법상 처벌이 없거나, 과태료 수준의 위법행위로 1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며, 가중처벌의 규범적 근거로 매우 미약함.

※ 양법간에 경영책임자라는 신분의 차이로 가중처벌의 근거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① 경영책임자가 기업경영을 총괄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 행위자보다 주의감독(과실)의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를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 하는 것은 형벌체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음. 교사나 방조가 아닌 경우에는 주의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만 지는 것이 타당함 ②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발생시 경영책임자가 행위자가 되어 산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많고, 대기업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분에 있어서 양법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영책임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까지 제3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됨.

○ 원청도 하청의 사고예방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나, 도급을 준 원청의 책임이 해당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하청과 동일할 수 없음.

○ 제3자의 종사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는 계약관계가 없고,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이 하청을 대신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는 하청이 직접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원청이 준수한 경우 불법파견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 개선·시정 명령 사항 이행조치도 하청이

직접 수행해야 할 의무이며, 원청의 역할로 부적합함.

- 현행 산안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와 다른 별도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함.

※ (산안법)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망 시 벌칙 없음, (중처법) 제4조 위반으로 특고종사자 사망 시 원청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한편, 중처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시기를 유예하고 있어 원청사업장 내에서 법을 위반한 50인 미만 하청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원청만 처벌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2>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 다수 산재(명확성 원칙 위배)

- 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내용만으로는 의무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움.
- 법률규정상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며, 특히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판단하기 매우 어려움
 - 정의규정은 법률에 시행령 위임규정이 없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해설서를 참고하고 있으나, 해설서는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해설서의 내용 또한 불명확함.
- 한편, 고용부는 해설서에 경영책임자를 특정하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자를 경영책임자로 선임한 경우에도 ‘사업대표’가 중처법상 의무주체 및 처벌대상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음.
 - 만약 ‘사업대표’와 ‘이에 준하는 자’ 모두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경우, 이는 법 제정 취지와 문언적 의미를 벗어난 정부의 자의적 판단임.
- 법문에서 “또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선택적 의미로 해석하

지 않을 경우, 범죄구성요건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 될 수 있음.

- 형벌법규의 해석 및 적용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하거나,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됨.
-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해석은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해석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음.

※ 국회 법안심사 논의과정에서도 원안인 “및”에서 “또는”으로 수정된 이유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였음.

□ 경영책임자의 4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 모두 법률상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어느 범위까지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하여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 수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법제4조제1항제1호)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제4조제1항 제4호)는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으나, 법률규정 자체만으로 그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준수해야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행정부의 자의적 행정입법을 초래할 여지가 커,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됨.

○ 한편 고용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어 모호하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현장 혼란이 심함.

- 정부 해설서에는 관련 법령 10개를 예시하고 있으나, 해설서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또한 예시형태로 규정됨.
-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련 법률만 좁게 보더라도 30개*가 넘고, 안전·보건과 관련성이 낮은 근로기준법도 포함되는지 불명확함.

※ 화학물질관리법, 소방관계법, 광산안전관계법, 철도·항공안전관계법, 원자력안전관계법, 전기안전관계법, 가스안전관계법, 건설안전관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승강기안전관계법, 감염병예방관계법, 환경관계법, 국방안전관계법, 재난

관리관계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연구실안전법.

-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조치는 이미 산안법 제15조 제1항 제6호(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된 내용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의무주체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산안법은 결과적 가중범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의무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는데, 중처법은 아무런 규범적 근거없이 중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 또한 고용부는 해설서를 통해 재해범위에 경미한 재해(반복 발생)도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으나, 모든 재해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적절치 않음.
 - 재해에는 경영책임자의 법 위반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경미한 재해(찢림, 베임 등)가 반복될 수도 있으며, 산업재해 외에 자연재해, 교통재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과로·스트레스에 의한 질병 등 다양한 유형의 재해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러한 재해들까지 경영책임자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함.
- 법제4조제1항제3호의 개선·시정명령등의 이행조치 사항도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안전보건관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해당 법률들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에도 중처법은 아무런 규범적 근거없이 중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 또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의 범위(제4조, 제5조, 제9조)가 지나치게 불분명하며, 제3자에 대한 의무주체가 복수인 경우 구체적인 의무범위를 파악할 수 없음.
- 도급, 용역, 위탁의 정의규정이 없고, 원청의 책임범위를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원청의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큼.
- 제3자의 종사자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주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누가, 어느 수준(범위)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음.

- *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관리자·운영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등.

<3> 과잉금지 원칙 위배

- 기본 과실범 형태의 산재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이상) 부과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음.
 - 중처법은 제4조 및 제5조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 제6조의 처벌조항은 업무상 과실범에 대한 처벌로 볼수 있는데, 1년이상의 징역형은 과실범에 대한 처벌로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것임.
 - 현재 중대재해 발생시 적용되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268)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동 법의 형량은 불법의 정도, 비난가능성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함.
 - 또한 단지 경영책임자라는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인 의무위반을 한 행위자보다 처벌을 중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산재사고는 대부분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이 상호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진다는 안전보건의 기본원칙과도 부합하지 않음.

<4>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문제점

-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과 벌금 부과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손해액의 5배 이내)까지 묻는 것은 과잉입법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책임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체계와 맞지 않으며, 현재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에게 형벌로서 기능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도함.

-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한 제재 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외국 입법례도 산업재해에 적용된 사례는 없음.
 -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인정될 수 있는데, 산업재해 사망은 경영책임자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님.
 - 5배 이내의 손해배상은 실질손해를 넘어서는 배상을 강제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실손해배상의 원칙」에 위배됨.
 - 민사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로 배상범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배상법의 기본원리임.
 - 피해자의 실질손해를 넘어서는 5배 이내의 배상강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없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국내 일부 개별법*에서도 통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한도로 하고 있음.
- * 제조물책임법, 특허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 동 법의 시행으로 인해 향후 거액의 배상금 지급을 기대한 무분별한 소송남발,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 배상금 지급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5> 중소기업 적용의 문제점

-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률 적용시(24.1.27) 많은 혼란과 처벌이 우려됨.
-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해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중소규모 기업은 현재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금상황까지 한계에 직면해 있어 상대적으로 법 준수가 더욱 어려운 실정임.

3 결론

- 중처법 제정 이후 평소 안전관리에 힘써왔던 기업들도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경영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 제정 후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한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간 상이한 해석이 존재하고, 정부의 해설서 역시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법 이행을 준비하는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기업의 책임만 강조하면서 법을 적용하기보다는 현장의 준비상황을 고려한 정책지원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무엇보다 처벌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방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정부에서 법률보완이 신속히 추진되길 바람.
- 중처법을 폐지하고 산안법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규정(1년이상)은 삭제하고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률개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시행령 및 지침 개정등을 통해 의무내용의 예견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직업성 질병자 중증도 기준 마련, 안전보건관계법령 특정, 도급·용역·위탁범위 한정 등). 끝.